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
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12. 17
시민보사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11월 23일 영등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4년 11월 2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0회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제2차 시민보사위원회(1994년 12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19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전면시행으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주체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 수집으로 이원화하여 주민단체 수집 판매대금은 주민단체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 수집·선별 비용 등에 재투자 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2) 기금의 재원은 관할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 운용수익금으로 함(안 제2조)
- 3)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수집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함.(안 제3조)
- 4)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출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조례제정 이유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라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관리를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주체가 주민단체와 자치단체로 이원화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기금관리에 따른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으며 구청장이 입안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	272
번호	

제출년월일 : 1994. 11.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사유

19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전면시행으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주체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 수집으로 이원화하여 주민단체수집 판매대금은 주민단체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 수집·선별 비용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기금의 재원은 관할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 운용수익금으로 함(안 제2조)
- 다.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수집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함(안 제3조)
- 라.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출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33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 다. 합의 : 의견없음
- 라. 기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 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별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 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자치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경비
2.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시민국장으로 기금출납공무

원은 청소과장으로 한다.

③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의 사용은 용도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7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중개정조례 안심사보고서

1994. 12. 12

시민보사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11월 26일. 영등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4년 11월 30일
- 다. 상정일자 : 제30회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제1